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 ① 이 과업지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자재 납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영종구로 승계되는 계약으로, 분구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물량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계약(계약금액 조정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을 말한다.
2. “제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과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 ① “제공자”는 “구매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계약기간 중 “제공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 ① 본 계약은 2026년 7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구매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구매자”가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 08:30분

- 지정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청 구내식당 조리실 내(하늘중앙로 201, 10층 구내식당)

- 반품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0:30분 이전

※ 특별한 상황 발생시 “구매자”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 ③ 구내식당 운영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구매자”가 “제공자”에게 긴급 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납품 시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영양사의 수량 확인, 규격 및 제품 상태를 검수받고 납품을 이행해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⑥ “구매자”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증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 ① “제공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공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 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제공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식자재 포장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국산인 경우 시·군·구 단위, 수입인 경우 나라 단위로 한다
- ②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납품한다.
- ③ 지역농산물이란, 우리 인천시·군청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수산물 제외)으로 한다.

1. 농산물

-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 다.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 라.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육류, 가금류

-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영양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 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 마. 발주시 절단요구사항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전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삼치 80g, 200개)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제공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 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제공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 ① 납품단가는 계약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된다.
- ② 식당 운영상 내역서에 없는 식자재 품목을 대체 납품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연간 평균단가에 낙찰률(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적용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3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며, 대가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익월 10일 이내에 결제한다.
- ②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영양사와 실수량 집계 및 금액확인 후 발행하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서류 일체가 완료된 일로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 ① “제공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 ① “구매자”는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구매자”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제공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제공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구매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정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매자”와 “제공자”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제공자”는 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 ① “구매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제공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제공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 나. 포장상태 불량
 - 다.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및 허위 표시
 - 라. 납품시각 미준수
 -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 아.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이물질 혼입
 -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 ② “구매자”는 납품기간 중 “제공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③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구매자”의 영업장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 ④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식당운영 해지 등)

제16조 (분쟁의 해석)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른다.